## 설명의무 관련 확인서

(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)

본 확인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(2014. 11. 29 시행)에 따라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, 비자금 조성, 조세포탈, 횡령 등 불법·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<u>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금지된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</u>거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서식 입니다.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법 재산의 은닉, 자금세탁 행위,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,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위 안내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동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(본인 신청시) 성명(업체명)

(인·서명)

(대리인 신청시) 본인

의 대리인

(인·서명)

- ▶ 공동대표 또는 공동명의 계좌 개설시 명의자 전원의 자필·서명 바람.
- ▶ 일괄계좌 개설시 개설요청 공문과 함께 본 확인서를 같이 징구 바람.(사업주 등에게 1회만 징구) (설명의무 이행 차원 "본인 신청시"란에 업체명 및 대표이사 성명 표시로 예금주별 개별 설명의무를 일괄로 이행한 것으로 갈음)

## ☞ 작성요령

- 1. 본인 직접 내점시 담당 직원의 설명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였음을 본인란에 자필·서명(날인) 기재 바랍니다.
- 2. 대리인 직접 내점시 담당 직원의 설명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리인란에 기재 바랍니다.
- 3. 상기 확인서의 작성 시점은 계좌개설(예·적금, 신탁, 수익증권, 외화 등) 시점에 작성 바랍니다.
- 4. 종업원, 학생, 군인 등 일괄계좌 개설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사업주, 학교장, 부대장, 경찰관서장 등 입니다.
- 5.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 청취를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